

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

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불인정 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하고자 하였으나,
폐문 및 부재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.

2024. 6. 14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



- 1. 건 명: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
- 2. 근 거: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, 제43조, 동법 시행령 제62조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 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공시송달 내용
김○희	1966. 12. 20.	경상남도 통영시 봉수2길 (이하생략)	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	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(피보험 단위기간 180일) 미충족으로 인한 수급자격 불인정	동 서류를 2024. 5. 21., 2024. 5. 31.에 송달하고자 하였으나, 부재로 인해 송달 불가

- 4. 공고기간: 2024. 6. 14. ~ 2024. 6. 28.(15일간)
- 5.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통영고용복지+센터 김영완(T.055-650-183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